

민정당헌법개정요강안검토

<법무부 의견>

1987. 7.

목 차

1. 보안처분의 요건	1
2. 피의자의 체포·구금시 가족에의 통지의무	3
3. 형사피해자의 재판상 진술권	4
4. 형사보상제도의 확대	5
5.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기준	6
6. 형사피해자에 대한 국가구호	7
7. 국정감사권	8
8. 대법원장, 대법관, 일반법관 선임방법	9

민 정 당 요 강 안	검 토 의 건	비 고
<p>(보안처분의 요건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 1 안 법률 (법원 및 그 이외의 기관의 결정)에 의한 보안처분 인정 ○ 제 2 안 형의 선고 (법원의 판결)에 의한 보안처분만 인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1안이 타당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안처분은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형벌과 다른 의미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처분으로서 그 성질상 전문성, 정책성, 신속성이 요청되므로 법원에서 일률적으로 이를 처리하기에는 부적당함. ○ 현행법에서도 윤락행위 상습자, 마약·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, 전염성 환자, 결핵환자 및 그 보호자, 유전질환자, 반국가사범 등에 대하여 그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내용에 따라 법원 아닌 의사 기타 전문인의 판단에 의하여 치료, 주거제한, 격리수용 등 보안처분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러한 입법례가 보편화 되어 있음.

민정당요강안	검토의견	비고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특히 우리나라가 처한 남북분단의 국가적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비상사태하의 용공분자에 대한 사회방위조치는 기동성 있는 탄력적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안처분심의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현행제도의 존속이 긴요한 실정임. ○ 따라서 그 대상자와 종류 및 요건이 각 상이한 보안처분을 일률적으로 헌법에서 형의 선고만에 의하도록 규정함은 부적절하고 오히려 보안처분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서 그 부과절차는 하위법인 법률에 규정함이 상당함.

민 정 당 요 경 안	검 토 의 견	비 고
<p>(피의자의 체포·구금시 가족에의 통지의무)</p> <p>○ 피의자가 체포·구금된 경우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함.</p>	<p>○ 헌법상 신설 불요</p>	<p>○ 형사소송법에 피의자 구속·구금시의 가족 등에의 통지의무 명시되어 있어 헌법상 규정할 실익 없음.</p> <p>○ 현행법 체포의 경우, 2중통지와 통지방법의 문제 있고</p> <p>- 소송절차상의 행위는 요식행위가 원칙으로 구두통지는 곤란</p> <p>○ 대만을 제외한 다른 외국의 입법례 없음.</p>

변 정 당 요 결 안	검 토 의 견	비 고
<p>(형사 피해자의 재판상 진술권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음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설 불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인소추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있고 법관의 자유심증주의 원칙 등 현행제도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○ 형사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(헌법 제26조)와 모순되고 ○ 피해자 진술은 현재에도 수사 및 재판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운영상의 문제이고 ○ 외국 입법례도 없으므로 구태어 헌법에 격상시킬 필요가 있는 제도로 보기 어려움.

민 정 당 요 강 안	검 토 의 건	비 고
<p>(형사보상제도의 확대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재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국민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도록 하던 것을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보상을 하도록 하여 국민의 형사보상 청구권을 확대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헌법상 신설 불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무혐의처분된 피의자에 대한 보상문제는 법률이나 규칙에서 정하도록 함이 상당하고 (현재 법무부령인 피의자보상규정으로 보상). ○ 각국 헌법 (이탈리아, 일본, 태국 등)도 형사피고인의 경우만 규정하고 있고 헌법에서 피의자 보상을 규정한 예가 없음.

민 정 당 요 강 안	검 토 의 견	비 고
<p>(군인등에 대한 국가배상기준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 1 안 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보장 받은 금액을 감안, 그 차액만 배상할 수 있는 헌법근거규정 ○ 제 2 안 이중 배상금지조항을 완전 삭제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상을 받도록 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1안이 타당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투중 사망한 군인과 작업중 사고로 사망한 군인간의 불균형한 배상체계를 시정할 수 있고 ○ 군인 등의 별도의 재판을 가급적 억제하여 군사기밀 누설, 군인위계질서 문란 등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○ 국가의 재정여건의 점진적 향상을 감안하여 제1안이 타당함.

민 정 당 요 강 안	검 토 의 건	비 고
<p>(형사피해자에 대한 국가구호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정한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생명·신체에 피해를 당한 국민에 대하여 가해자의 무자력 등으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이를 구호하도록 하는 형사피해자 보상제도를 신설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헌법상 신설 필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 제도는 독립적으로 헌법에 객상시킬 전통적 기본권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, ○ 헌법규정을 두더라도 그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내용은 일본 등 각국의 입법례와 같이 구호대상 및 금액 등에 관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위헌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은 물론, 충분히 구호를 하지 못할 경우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어 오히려 비난의 소지가 있고 ○ 각국 헌법에도 이를 규정한 입법례 없음.

단 정 당 요 건 안	검 토 의 건	비 고
<p>(국정감사권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 1 안 국정감사권을 인정하되 감사대상 범위 절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법률에서 제한 ○ 제 2 안 국정조사권만 인정하되 발동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 ○ 제 3 안 국정조사권만 인정하고 발동요건도 종전대로 유지 (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판과 진행중인 범죄수사 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는 단서 규정 삭제 불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행 단서 규정은 사법권의 독립과 형사사법의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규정으로 ○ 이를 삭제할 경우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 국정감사권 내지 조사권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삭제는 불가 (미국, 일본 등은 헌법 해석상 원칙으로 확립).

민정당요강안	검토의견	비고
<p>(대법원장, 대법관, 일반법관 선임방법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 1 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법원장 : 대통령이 국회 동의하여 임명 - 대법관 : 대법원장 제청 으로 대통령이 임명 - 일반법관 : 대법원장이 임명 ○ 제 2 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법원장 :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하여 형식적 임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1안이 타당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1안이 대통령제 국가의 일반적 입법례이고 (미국, 멕시코, 브라질, 필리핀 등 대다수국가) ○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을 임명함은 합리적이고 ○ 일단 임명된 이상 헌법상 재판의 독립이 당연히 보장되므로 대통령 임명에 따른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 주장은 이론상 직접 관련이 없고 ○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의할 경우에도 반드시 법원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할 수 없고, 오히려 폐해가 많을 수 있음.

민 정 당 요 강 안	검 토 의 건	비 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법관 : 대법원장이 법관 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형식적 임명. - 일반법관 :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. 		